

【논문】

롤즈의 공정으로서의 정의가 현대 입헌 민주주의의 위기에 대해 갖는 실천적 함의

정태창

【주제분류】 사회철학, 정치철학, 윤리학

【주요어】 입헌 민주주의, 경제적 민주주의, 정의론, 공리주의, 기본권, 불평등

【요약문】 현대 사회에서 입헌 민주주의는 시장에 종속됨으로써 형식적인 것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다. 롤즈의 공정으로서의 정의는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입헌 민주주의를 온전히 실현하는 것을 핵심목표로 하며, 이를 위해 롤즈는 크게 사회 정의관과 이를 만족시키는 사회의 기본 구조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입헌 민주주의적인 전환을 시도한다. 첫째, 롤즈는 현대 사회에서 시장의 논리를 관철시키는 이데올로기의 역할을 하는 공리주의를 입헌 민주주의에 적합한 정의관인 공정으로서의 정의로 대체함으로써 시장의 효율성에 대한 민주주의적 정당성의 우위를 재확인하고자 한다. 둘째, 롤즈는 분배를 원칙적으로 시장에 맡겨둠으로써 민주주의적 기본권과 양립할 수 없는 경제적·사회적 불평등을 방조하는 복지국가 자본주의를 입헌 민주주의의 원칙에 따라 시장의 분배에 강력한 규제를 가하는 재산소유 민주주의로 대체함으로써 민주주의와 시장 사이의 현존하는 권력관계를 역전시키고자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롤즈의 공정으로서의 정의는 시장에 대한 민주주의의 우위를 확고히 함으로써 현대 입헌 민주주의의 위기를 해결하려는 시도로 평가될 수 있다.

I. 서론

현대 입헌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해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도처에서 들려오고 있다.¹⁾ 입헌 민주주의와 양립하기 어려운 성격을 갖는 자립적 체계들이 막강한 권력을 갖게 되면서 입헌 민주주의를 형식적인 것으로 전락시키고 있다는 것이 이러한 우려의 핵심이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반민주주의적인’ 체계들의 중심에는 경제적 효용성의 증대를 모토로 하는 시장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²⁾ 사회학자인 크라우치(Colin Crouch)는 현대 사회가 민주주의의 형식은 유지하면서도 정치와 정부가 민주주의 이전 시대에 특징적이었던 방식으로 경제 엘리트의 통제에 종속되어 가는 포스트-민주주의(post-democracy)의 시대로 진입했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입헌 민주주의의 쇠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시장과 다른 모든 영역 사이에 나타난 힘의 커다란 불균형에 있다고 진단한다.³⁾ 근대 사회를 태동시키고 이끌어온 두 개의 중심축인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사이의 모순은 점점 더 전자에 후자를 종속시키는 방식으로 해소되고 있으며, 그 결과 현대 사회에서 입헌 민주주의는 시장의 하부체제로 전락하여 본래적인 의미를 상실할 위험에 처해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현대의 입헌 민주주의에 대한 논의는 이러한 위기상황을 명료하게 파악하고 적실한 해법을 제시해야 할 시대적 책무를 갖는 것으로 생각된다.

-
- 1) 현대 입헌 민주주의의 위기에 대한 최근의 논의에 대해서는 다음의 저작들을 참조. T. Skocpol, *Diminished democracy*, Norman: University of Oklahoma Press, 2003; B. Barber, *Strong democrac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3; C. Crouch, *Post-Democracy*, Cambridge: Polity Press, 2004; N. Wood, *Tyranny in America: Capitalism and National Decay*, London/New York: Verso, 2004; C. Tilly, *Democracy*, Cambridge/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7; G. Agamben et al., *Démocratie, dans quel état?*, Paris: La fabrique, 2009.
 - 2) 본 논문에서는 ‘자본주의’를 사상 혹은 사회구성의 원리를 표현하는 용어로 사용하고, 이에 대응하는 사회 체계를 표현할 때는 ‘시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 3) C. Crouch, *Post-Democracy*, Cambridge: Polity Press, 2004, 104쪽.

롤즈는 현대 입헌 민주주의의 위기를 동시대의 그 누구보다도 심각하게 통감하고 이에 대한 해법을 근본적인 차원에서 제시하기 위해 노력한 철학자라고 할 수 있다. 그의 공정으로서의 정의는 현대 입헌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구조에 적용되기 위해 고안된 정치적 정의관으로서 입헌 민주주의를 실질적으로 실현하려는 실천적인 목적을 갖는 것이기 때문이다.⁴⁾ “나는 공정으로서의 정의의 핵심적인 관념 및 목적을 입헌 민주주의를 위한 철학적 입장의 관념 및 목적으로 간주한다.”⁵⁾ 그런데 롤즈에 대한 기존의 대부분의 연구들은 공정으로서의 정의를 주로 도덕철학적인 지평에서 다루거나 공정으로서의 정의와 민주주의의 관계를 이론적이고 원리적인 차원에서 검토함으로써 공정으로서의 정의가 정치적 정의관으로서 현대 입헌 민주주의의 위기에 대해 갖는 강력한 실천적 함의를 명료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⁶⁾ 그러나 롤즈의 문제의식이 “항상 시대적인 것이었고,

-
- 4) 롤즈가 말하는 입헌 민주주의(constitutional democracy)는 절차적 민주주의(procedural democracy)와 대비되는 개념이다. 롤즈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입법에 있어 어떠한 입헌적인 제한도 없어서 적절한 절차-법을 확정하는 일련의 규칙들-를 따른다면 다수 (혹은 과반수)가 법령화하는 것은 무엇이든 법이 되는 민주주의”로 규정한다(J. Rawls, *Justice as Fairness: A Restatement*, Erin Kelly(ed.), Cambridge/London: Th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2001, 145쪽). 절차적 민주주의에서는 입법의 내용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평등한 기본권을 부정하는 법안이 통과될 수도 있다. 이에 비해 입헌 민주주의는 정의의 제1원칙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은 평등한 기본적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게끔 법률을 제정해야 하는 체제이며, 여기서는 평등한 기본적 자유의 원칙이 법안 제정 과정에 ‘입헌적인 제한’(constitutional limits)으로 작용한다. 이처럼 롤즈는 입헌 민주주의를 평등한 기본적 자유의 개념-롤즈는 여기에 ‘평등한 정치적 자유’라는 이름하에 국민주권의 개념을 포함시킨다-을 중심으로 파악한다.
- 5) J. Rawls, *A Theory of Justice. Revised Edition*, Cambridge/London: Harvard University Press, 2003, xi쪽. 이하 TJR로 약칭하여 본문에 쪽수를 표기한다.
- 6) 정원섭에 따르면 롤즈의 정의론에 대한 기존의 논의는 다음의 세 가지 구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정원섭, 『공적 이성과 민주적 의지 형성-존 롤즈의 정치적 자유주의』,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4, 3-9쪽 참조). 1) 의무론자인 롤즈와 결과론자인 공리주의자들 사이의 규범 윤리학적 논쟁 2) 평등주의적 자유주의자로서의 롤즈와 자유지상주의인 노직(R. Nozick)의

시대적 과제에 직면하여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⁷⁾이라면, 그의 공정으로서의 정의는 그것이 해결하고자 하는 시대적 과제와의 밀접한 연관 하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이 논문의 목적은 롤즈의 공정으로서의 정의가 현대 입헌 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어떠한 해법들을 제시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데 있다.⁸⁾ 이를 위해 먼저 롤즈의 공정으로서의 정의가 입헌 민주주의를 사회구성의 최종적인 준거점으로 놓고 이를 중심으로 사회 전반을 변혁하려는 함의를 갖는다는 점을 알아볼 것이다. 그리고 롤즈가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 사회 정의관과 사회의 기본 구조라는 두 측면에서 ‘입헌 민주주의적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공정으로서의 정의의 근본이념: 사회 구성의 최종적인 준거점으로서의 입헌 민주주의

우리는 앞서 입헌 민주주의가 현대 사회에서 점점 더 강화되고 있는 시장의 권력에 종속되어 형식적인 것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다는 점을 살펴본 바 있다. 이러한 진단의 배경에는 근·현대사회를 이끌어온 두 개의 중심축인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상보적이 아니라

논쟁 3) 자유주의자로서의 롤즈와 맥킨타이어(A. MacIntyre), 왈쩌(M. Walzer) 등 공동체주의자들 간의 논쟁. 특히 한국에서는 롤즈를 자유주의자로 규정하고 자유주의 담론의 스펙트럼 안에서 롤즈의 상대적인 위치를 가늠해보는 논의가 주류를 이루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러한 논의들은 공정으로서의 정의와 현존하는 사회의 직접적인 연관을 문제 삼지 않는다는 점에서 도덕철학적이며 일정한 한계를 갖는 것으로 생각된다.

7) 김명식, 『롤즈의 공적 이성과 심의민주주의』, 『철학연구』, 제65집, 2004, 264쪽.

8) 이 논문에서는 롤즈가 『정치적 자유주의』에서 포괄적 교설/정치적 정의관의 구분을 제시하면서 제기한 문제, 즉 포괄적 교설들의 다원주의로 규정되는 현대 입헌 민주주의 사회 내에서 공정으로서의 정의가 정치적 정의관으로서 중첩적 합의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시장과 민주주의의 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본 논문의 논의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보아 다루지 않을 것이다.

대립적이라는 전제가 놓여 있다.⁹⁾ 이러한 전제가 타당성을 갖는다면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갈등은 양자가 충돌할 경우 어느 한 쪽을 택하게 하는 우선성의 규칙을 마련하지 않는 한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즉 우리는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중 하나를 우선적으로 택해야 하며, 그에 따라 자본주의/민주주의에 각각 속하는 대립적 가치들, 즉 소유권/시민권, 효용성/정당성, 시장 분배/민주주의적 분배 등에 있어 어느 한 쪽의 우위를 확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¹⁰⁾ 현대 사회의 주요한 흐름은 후자를 점차적으로 전자에 종속시켜가는 것이었으며 그 결과 입헌 민주주의가 위기를 맞게 되었다. 그렇다면 입헌 민주주의의 실질적인 실현은 이러한 종속관계를 역전시켜서 민주주의에 자본주의를 종속시키는 한에서만, 즉 두 원리가 충돌할 때 민주주의에 우선성을 부여하는 한에서만 가능할 것이다.

롤즈의 공정으로서의 정의는 이러한 기본적인 생각을 가장 근본적이고 철저하게 전개해나가는 정치적 정의관이다. 일반적으로 입헌 민

9) 예를 들어 하버마스는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사이의 대립관계를 체계/생활세계의 도식에 따라 이해한다.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사이에는 해결 불가능한 긴장관계가 있다. 즉 이 양자 사이에서는 사회 통합의 두 가지 대립되는 원리들이 우위를 차지하려고 경쟁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규범적 의미는 사회 이론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식화 된다: 체계적으로 통합된 행위영역의 기능적인 필요성들의 충족은 생활세계의 보전, 즉 사회적 통합에 의존하고 있는 행위영역의 요구들에 의해 한계 지워져야 한다.... [반면에] 자본주의의 체계적인 고유 의미는 사회 이론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식화 된다: 체계적으로 통합된 행위영역의 기능적 요구들은 필요한 경우 생활세계의 기계화(Technisierung)를 댓가로 해서라도 충족되어야만 한다.”(J. Habermas, *Theorie des kommunikativen Handelns. Band II: Zur Kritik der funktionalistischen Vernunft*, Frankfurt am Main: Suhrkamp, 1995, 507-508쪽)

10) 보울스(S. Bowles)와 진티스(H. Gintis)는 생산의 세계화가 국민국가의 주권을 위협함으로써 이러한 양자택일을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투자에 대한 사회적 통제가 부재한 속에서 생산의 세계화는 국민국가의 주권에 도전한다. 왜냐하면 생산의 세계화로 인해 사실상 민주주의자들은 투자의 사적 통제-무력한 경제정책을 수반하는-와 무력한 민주주의를 선택하든지, 아니면 투자의 사회적 책임을 위한 민주제도의 발전을 선택해야 하기 때문이다.”(S. Bowles & H. Gintis, *Democracy and Capitalism*, New York: Basic Books, Inc., 1987, xiv-xv쪽)

주주의는 전체 사회의 여러 하부체계들 중 하나인 정치 체계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되어 왔으나, 공정으로서의 정의에서는 ‘사회의 기본 구조’ 자체가 입헌 민주주의로 규정되면서 입헌 민주주의가 사회 전체에 대한 구성적 원리로 기능한다. “공정으로서의 정의는 내가 사회의 ‘기본구조’라고 부르는 것에 적용된다. 사회의 기본구조는 우리의 현재의 목적에서 현대의 입헌 민주주의로 간주되고 있다. 나는 ‘기본구조’라는 용어로 사회의 주요 정치, 경제, 사회 제도와 이들이 서로 연결되어 세대 간에 걸친 하나의 통일된 사회 협동체로 구성되어 있는 양태를 가리킨다.”¹¹⁾ 이처럼 공정으로서의 정의에서는 입헌 민주주의가 사회 구성의 최종적인 준거점으로 설정되며 그에 따라 시장을 포함한 사회 제도 전반은 입헌 민주주의를 실질적으로 실현시키는 방식으로 재구성된다.¹²⁾

여기에는 입헌 민주주의와 양립하기 어려운 원리를 갖는 자립적 체계들—대표적으로 시장—을 입헌 민주주의에 적합하게 변형하지 않는 한 입헌 민주주의가 온전히 실현될 수 없다는 롤즈의 생각이 반영되어 있다. “지난 2세기 동안의 민주주의 사상의 경로를 살펴보면 시민의 기본권과 자유를 명시하고 보증하기 위해, 그리고 민주주의적 평등의 요구를 만족시켜주기 위해 입헌 민주주의의 기본 제도들이 어

11) J. Rawls, *Political Liberalism*,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3, 11쪽. 이하 PL로 약칭하여 본문에 쪽수를 표기한다.

12) 김비환은 자유주의를 시장과 민주주의의 관계 설정을 기준으로 삼아 다음의 세 가지로 분류한다. 1) 노직(R. Nozick), 하이예크(F. Hayek) 등을 중심으로 하는 시장 우선적 자유주의. 2) 민주주의 제도의 중요성을 시장과 대등하게 인정하고 있는 ‘균형적’ 자유주의. 3) 로버트 달(R. Dahl), 왈쩌(M. Walzer) 등을 중심으로 하는 민주주의(우선적 자유주의). 김비환은 롤즈를 ‘균형적 자유주의’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하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롤즈에게는 민주주의가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하나의 원리로서 시장경제의 (도덕적) 결함과 한계를 제약하거나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김비환, 『자유지상주의자들, 자유주의자들, 그리고 민주주의자들: 기본권을 통해본 시장과 민주주의』,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05, 66쪽). 이러한 주장에 따르면 롤즈는 시장경제를 기본적인 원리로 놓고 이를 민주주의로 보완하려는 자유주의자가 되지만 필자는 이에 동의할 수 없다. 롤즈는 균형적 자유주의자가 아니라 민주주의 우선적 자유주의자로 분류되어야 한다.

떻게 구성되어야 하는지에 관해서 아무런 합의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난다.”¹³⁾ 이러한 합의의 부재를 문제 삼는 배경에는 현대 입헌 민주주의가 사회의 기본 제도들을 입헌 민주주의에 적합하게 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들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는데 실패했다는 롤즈의 문제의식이 있다. 바꾸어 말하면 입헌 민주주의의 기본 제도, 즉 사회의 주요 정치, 경제, 사회 제도를 그러한 보장이 가능하게 구성해야 하는 것이다.¹⁴⁾ 입헌 민주주의의 전통 속에 뿌리박혀 있는 직관적 신념들만을 추출하여 만들어진 공정으로서의 정의가 사회의 기본구조에 적용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민주주의보다는 자본주의에 우선성을 부여함으로써 양자 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현대 사회의 주요한 흐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그와 정반대로 입헌 민주주의를 사회 구성의 최종적인 준거점으로 삼고 시장을 비롯한 사회 제도 전반을 변혁하려는 롤즈의 공정으로서의 정의는 심대한 정치적 함의를 갖는 것으로 보인다. 말하자면 롤즈는 점점 더 시장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 현대 사회에 일종의 ‘입헌 민주주의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는 것이다. 롤즈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크게 사회 정의관과 이를 만족하는 사회의 기본 구조의 두 측면에서 전환을 요구하고 있으며, 전자는 공리주의적 정의관에서 공정으로서의 정의로의 전환에, 그리고 후자는 복지국가 자본주의에서 재산소유 민주주의(property-owning democracy)로의 전환에 각각 관련된다.

13) J. Rawls, “Justice as Fairness: Political not Metaphysical”, reprinted in: Samuel Freeman (ed.), *John Rawls. Collected Papers*, Cambridge/ London: Harvard University Press, 1999, 391쪽.

14) 1978년에 발표된 논문인 『주제로서의 기본 구조』에서 롤즈는 기본 구조에 속하는 제도들이 정의의 배경적 조건들을 만족시킬 수 있게 구성되지 않는 한 여러 가지 사회적 요인에 의해서 공정한 협동 체계로서의 사회가 소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의의 일차적 주제가 사회의 기본 구조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J. Rawls, “The Basic Structure as Subject”, in: Alvin I. Goldman and Jaegwon Kim (eds.), *Values and Morals*, Dordrecht/Boston: D. Reidel, 1978, 53-55쪽).

Ⅲ. 사회 정의관의 전환: ‘(경제적) 효율성=정의’인 사회에서 공정한 협동체계로서의 사회로

1971년에 출간된 『정의론』에서 공정으로서의 정의의 핵심 목표는 계약론적 전통 속에 함축된 정의관을 체계적으로 이론화함으로써 공리주의적 정의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민주주의 사회를 위한 가장 적합한 도덕적 기초를 마련하는 것으로 규정된다(TJR, xvii-xviii쪽). 여기에는 공리주의적 정의관을 공정으로서의 정의로 대체하는 것과 입헌 민주주의의 실현 사이에 긴밀한 내적 연관관계가 있다는 점이 함축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연관관계를 분석함으로써 공리주의적 정의관에서 공정으로서의 정의로의 전회가 입헌 민주주의의 실현에 대해 갖는 실천적 함의를 알아보려고 한다.

롤즈는 공정으로서의 정의가 대체하고자 하는 것은 공리주의 이론의 어떤 특정한 형태가 아니라 공리주의 사상 일반임을 밝히고 시즈윅(Henry Sidgwick)에 의해 정식화된 고전적 공리주의—한 사회의 중요 제도가 그에 속하는 모든 개인이 만족의 최대 순수 잔여량을 달성하도록 편성될 경우 그 사회는 정의롭다—를 공리주의의 대표적인 모델로 채택하여 계약론과 비교한다(TJR, 19-20쪽). 롤즈는 이러한 비교를 통해 도덕철학으로서의 공리주의의 취약성을 드러내고 계약론적 정의관인 공정으로서의 정의가 우위에 있음을 주장한다.

그런데 도덕철학으로서의 공리주의는 어떤 유형이든 다음의 두 가지 문제점을 공통적으로 갖는 것으로 생각된다.¹⁵⁾ 첫째, 공리주의의 핵심개념인 ‘善’을 규정하려는 시도는 다음과 같은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공리주의는 규범적 문제가 발생하는 모든 맥락을 다룰 수 있는 한에서만 포괄적인 도덕적 교설로서의 지위를 주장할 수 있으며, 그를 위해서는 ‘善’ 개념이 최대한 넓은 외연을 갖게 규정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그 경우 ‘최대선’의 개념은 무엇이든 포섭할 수 있는 공

15) 공리주의가 갖는 원리적 난점들에 대해서는 황경식, 『社會正義의 철학적 기초』, 문학과지성사, 1985 참조.

허한 것이 되며, 결과적으로 공리주의는 논박 불가능하지만 공허한 입장이 되고 만다. 둘째, **선은 질(質)적이며 양화될 수 없기 때문에 계산가능성의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한다.** 예를 들어 쾌락 공리주의에서 말하는 ‘쾌락’은 심리상태이기 때문에 양화 혹은 단위화가 불가능하다. 쾌락 공리주의를 거부하고 질적 공리주의 혹은 다원 공리주의를 채택하는 경우 **선의 측정과 계산은 더욱 더 가망 없는 것이 된다.**

도덕철학으로서의 공리주의가 갖는 이러한 두 가지 문제점—**선 개념의 공허함, 선의 계산 불가능성**—은 관점에 따라서는 공리주의를 거부할 결정적인 이유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공리주의를 현대의 가장 우세한 도덕철학으로 만드는 요소가 있다면 그것은 공리주의가 이론으로서 갖는 **정합성과는 다른 맥락, 즉 공리주의가 현대 사회에서 실천적인 원리로서 작동하는 맥락에 놓여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실질적인 실천적 원리로서의 이러한 공리주의는 현대 사회에서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므로 도덕철학으로서의 공리주의가 갖는 두 가지 난점, 즉 **선 개념의 공허함과 선의 계산 불가능성**을 실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두 가지 난점은 **선이 현대 사회의 핵심적인 가치 척도인 화폐, 그리고 그를 통해 표현되는 경제적 효용성으로 규정됨으로써 사라진다.**¹⁶⁾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는 추상적인 개

16) 베이커(R. W. Baker)는 **벤담 공리주의의 효용 개념이 화폐에 의해 측정되는 경제적 효용의 개념으로 전환되는 역사적 과정을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먼저 벤담 공리주의의 효용 개념은 제본스(W. S. Jevons)에 의해 경제학에 도입되어 정치경제학에서 수학을 주요한 분석도구로 삼는 순수 경제학으로의 전환을 이끌게 된다. 이제 경제학의 중심 개념이 된 효용은 다시 저명한 경제학자인 마셜(A. Marshall)에 의해 ‘**화폐**’ 혹은 ‘**일반구매력**’에 의해 측정되는 것으로 규정됨으로써 철학적 효용 개념의 불확실성을 떨쳐버리며, 이에 따라 공리주의의 ‘**최대선**’은 마셜의 계승자였던 피구(A. C. Pigu)에 의해 국민총생산(GNP)의 개념으로 발전하게 된다. 베이커에 따르면 공리주의의 효용 개념의 이러한 전환 과정은 공리주의가 ‘**자본주의의 철학적 토대**’로서 깊이 뿌리내리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공리주의는 우리가 잠시도 생각해본 적이 없다 해도, 오늘날 서구 자본주의 안에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 또한 공리주의라는 자본주의의 철학적인 토대는 초기에 형성된 이래 근본적으로 변화하지 않았다.”(R. W.

념인 **효과**는 달리 **화폐**는 실물로서 현실 속에서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 사회적 실체이다. 또한 **화폐**는 맑스에 따르면 “모든 것을 구매하는 속성을 가짐으로써, 모든 대상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속성을 가짐으로써 우월한 의미를 갖는 대상”¹⁷⁾이다. 따라서 **효**가 구체적이면 서도 보편적으로 규정되어야 한다는 공리주의의 첫 번째 난점이 해결되며, **효**의 계산가능성이라는 두 번째 난점 또한 **화폐**가 가치 척도로서 현대 사회의 거의 모든 가치들을 단위로 환산시킬 수 있기 때문에 대체로 해결된다고 할 수 있다. 이로서 공리주의(utilitarianism)의 공리(utility)는 현실 속에서 주로 경제적 공리(economic utility)로 현현하며 이러한 현현을 통해서 현대 사회 내에서 실질적인 지배력을 갖게 된다. 이를 시장의 이해관계를 대변한다는 의미에서 ‘시장 공리주의’로 칭하도록 하자.

효를 **화폐**로 매개되는 경제적 효용성으로 규정하는 시장 공리주의의 정의관은 ‘경제적 효용성=사회 정의’라는 등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 이 원칙은 사회 정의를 실질적으로 경제적 효용성으로 환원하지는 못하지만 사회 정의에 대한 요구를 최대한 억제한다. 이에 따라 도덕철학으로서의 공리주의의 핵심인 **옳음**에 대한 **좋은**의 우선성은 시장 공리주의가 지배적인 현대 사회에서는 지배의 합리화에 대한 경제성장(예를 들어 GNP의 증대)의 우선성이라는 정당화의 이데올로기로 나타난다. 현존하는 지배는 (비록 정의롭지는 않지만) 사회의 경제적 효용성을 위해서, 그리고 그를 통해 보장될 것으로 생각되는 생활수준의 향상을 위해 감내해야 하는 것이 된다. “현대 사회는 원심적인(centrifugal) 사회 세력들을 테러보다는 기술을 통해, 압도적인 효용성과 생활수준의 증대라는 이중적 기초를 통해 정복한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¹⁸⁾ ‘경제적 효용성=사회 정의’라는 시장 공리주의의 원

Baker, *Capitalism's Achilles Hill*, Hoboken: John Wiley & Sons, Inc., 2005, 319쪽)

17) K. Marx, “Ökonomisch-philosophische Manuskripte aus dem Jahre 1844”, *Marx Engels Werke*. Ergänzungsband I: Schriften, Manuskripte, Briefe bis 1844, Berlin: Dietz Verlag, 1981, 563쪽.

칙은 말하자면 자본주의의 아프리오리를 정식화한 것이다. 일찍이 맑스가 통찰한 바 있듯이 자본주의는 생산력을 끊임없이 증대해가는 한에서만 존속할 수 있다.¹⁹⁾ 시장 공리주의는 현대 사회 내에서 자본주의의 이러한 아프리오리한 조건을 그 자체로 정당화할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의 전개과정에서 생겨나는 모든 병리현상과 부조리에 대한 시정의 요구를 생활수준의 향상에 대한 약속을 통해 끊임없이 약화시키는 이데올로기로 작동한다.²⁰⁾

여기에서 시장 공리주의와 입헌 민주주의가 충돌하게 되는 이유를 파악할 수 있다. 시장 공리주의를 따를 경우 경제적 효율성이 정당성의 최종적인 준거점이 된다. 이 경우 결국 정당성의 최종적인 준거점이 되는 사회 체계는 시장이며, 다른 체계들은 시장을 중심으로 시장의 경제적 효율성에 도움이 되는 한에서만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있다.²¹⁾ 그런데 이러한 기본 구도는 입헌 민주주의와 양립하기 어려운 것이다. 입헌 민주주의는 원리상 시장에서 창출되는 경제적 효율성에 의해서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구성의 근본 원리로서 그 자체로 정당성의 최종적인 준거점으로 기능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현대 사회에서 시장 공리주의는 입헌 민주주의의 핵심을 훼손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게 된다. 예를 들어 롤즈가 지적하고 있듯이 입헌 민주주의에서 자유롭게 평등한 인격체로서의 시민들의 기본적

18) H. Marcuse, *One-Dimensional Man*, Boston: Beacon Press, 1964, x쪽.
19) K. Marx & F. Engels, "Manifest der Kommunistischen Partei", *Marx Engels Werke*. Band 4, Berlin: Dietz Verlag, 1990, 465쪽 참조.
20) 현대 공리주의가 '놀라울 정도로 체제 순응적'이며 어떠한 상황이라도 현상유지를 지키려는 경향을 갖는다는 김리카(Will Kymlicka)의 지적은 이와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보인다. W. Kymlicka, *Contemporary Political Philosoph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2, 45-46쪽 참조.
21) 이러한 점에서 시장 공리주의는 하버마스가 말하는 '새로운 이데올로기'와 같은 맥락에 있다. "새로운 이데올로기는 정당화의 기준을 공동생활의 조직과 상호행위의 규범적 규정으로부터 떼어내고 이러한 의미에서 탈정치화하며 그 대신에 그것을 목적 합리적 행위라는 중속된 체계의 기능에서 확정한다."(J. Habermas, "Technik und Wissenschaft als >Ideologie<", *Technik und Wissenschaft als >Ideologie<*, Frankfurt am Main: Suhrkamp, 1974, 90쪽)

권리와 자유는 칸트적인 의미에서 정언 명령과 유사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TJR, 222쪽). 즉 입헌 민주주의 내에서 시민들의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는 거의 무조건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어떤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시장 공리주의는 원리적으로 시민의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를 경제적 효율성이라는 목적을 위한 수단 외에 다른 것으로 파악할 수 없다.²²⁾ 입헌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가치인 시민들의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는 시장 공리주의에 의해 일반적으로 경제적 효율성이라는 이질적인 척도에 종속되어 경제적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해 적절한 수단임을 끊임없이 검증받아야 하며 검증결과에 따라서는 경제적 효율성을 위해 충분히 희생될 수 있는 ‘가언적인’ 것이 된다. 그 경우 입헌 민주주의는 실질적으로 훼손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²³⁾

따라서 현대 사회에서 입헌 민주주의가 온전하게 실현되기 위해서는 경제적 효율성을 정당성의 최종적인 준거점으로 놓음으로써 입헌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시장 공리주의적 정의관이 입헌 민주주의 자체를 정당성의 최종적인 준거점으로 놓는 새로운 정의관으로 대체될 필요가 있다. 롤즈의 공정으로서의 정의는 입헌 민주주의 사회에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기본적인 합의를 계약론적 접근을 통해 재구성함으로써 이러한 요구를 만족시키고자 한다.

공정으로서의 정의의 기본적인 생각은 사회 정의를 공정한 협동체계로서의 사회라는 개념에 의해 설명할 수 있다는 데 있다. 즉 사회가 공정한 협동체계인 경우 그 사회는 정의롭다는 것이다. 따라서 공정

22) “공리의 원칙이 설명할 수 없는 사실은 정의로운 사회에서 시민의 자유가 확정된 것으로 인정되며, 정의에 의해 보장된 권리들은 정치적 흥정이나 사회적 이득의 계산에 희생되지 않는다는 점이다.”(J. Rawls, “Distributive Justice”, reprinted in: Samuel Freeman(ed.), *John Rawls. Collected Papers*, Cambridge/London: Harvard University Press, 1999, 131쪽)

23) 이는 마르크세의 다음과 같은 우려와 맥을 같이 한다. “선진 산업 문명에서 기술적인 진보의 징후로서 편안하고, 부드럽고, 합당하며 민주적인 부자유가 나타난다.... 산업 사회의 근원적이고 앞선 단계들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였던 권리와 자유들이 산업 사회의 더 높은 단계들에 굴복하여 전통적인 근거들과 내용을 상실하고 있다.”(H. Marcuse, 앞의 책, 1쪽)

으로서의 정의에서는 공정한 협동체계로서의 사회의 개념이 모든 다른 직감적 개념들을 체계적으로 조직하는 근본적인 구성개념이 된다(PL, 15-16쪽). 공정으로서의 정의의 핵심물음은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식화될 수 있다. ‘사회가 공정한 협동체계로 구성되려면 어떠한 조건들을 만족시켜야 하는가?’ 롤즈는 사회 협동체에 참여한 사람들이 하나의 공동 결의를 통해서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를 할당하고 사회적 이득의 분배를 정해줄 원칙들을 함께 채택하는 가상적 상황을 설정함으로써, 즉 정의의 원칙이 원초적 입장에서 채택되는 상황을 설정함으로써 이러한 물음에 답하고자 한다(TJR, 10쪽). 원초적 입장을 규정하는 두 가지 조건인 무지의 베일과 상호 무관심한 합리성은 각각 시민적 덕목의 차원에서는 합당성과 합리성을,²⁴⁾ 그리고 사회적 가치의 차원에서는 공정성과 효율성을 반영한다. 원초적 입장의 당사자들은 합리적 개인으로서 효율성을 추구하면서 또한 합당한 개인으로써 기꺼이 무지의 베일을 씌우로서 공정성을 만족시키는 정의의 원칙들을 채택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렇게 하여 공정으로서의 정의의 내용적인 핵심을 이루는 정의의 두 원칙이 원초적 입장에서 도출되는 것이다. 공정으로서의 정의에서는 사회의 기본 구조가 정의의 두 원칙을 만족시키는 방식으로 구성된 경우 그 사회는 공정한 협동체계이며, 따라서 정의롭다고 할 수 있다.

시장 공리주의가 ‘경제적 효율성=사회 정의’라는 원칙을 내세우는데 비해 공정으로서의 정의에서는 ‘협동체계의 공정성=사회 정의’가 원칙이 되며, 이에 따라 (경제적) 효율성이라는 사회적 가치는 공정성에 종속된다. 롤즈는 이를 정의의 우선성이라는 말로 표현한다. “정의의 우선성이란 어떤 면에서 정의의 위반을 요구하는 욕구는 무가치하다는 주장에 의해 설명되어진다. 일차적으로 합당한 가치를 갖고 있지 못한 이상 그것들이 정의의 요구를 침해할 수는 없는 것이다.”(TJR, 28쪽) 그런데 도덕철학적 지평에서 이루어지는 정의(공정성)와 효율

24) 합당한 것(the reasonable)과 합리적인 것(the rational)의 구분에 대해서는 PL, 48-54쪽 참조.

성 사이의 우선성, 혹은 옳음과 좋음 사이의 우선성 논쟁은 입헌 민주주의의 제반 가치들과 경제적 효율성이라는 시장의 가치 사이의 갈등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차등의 원칙의 해석과 관련된 롤즈의 다음과 같은 언급에서 잘 드러난다. “효율성의 원칙이 모든 사람의 전망을 향상시키는 변화들만이 허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되는 경우 민주주의적 입장은 효율성의 원칙과 상충하게 된다. 정의는 효율성에 우선하며 이러한 의미에 있어서는 비효율적인 어떤 변화를 요구하게 된다.”(TJR, 69쪽) 이는 공정으로서의 정의가 시장의 경제적 효율성이 입헌 민주주의를 훼손시키는 수준까지 추구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정으로서의 정의 하에서 경제적 효율성은 어디까지나 협동체계의 공정성을 훼손하지 않는 한에서 추구되어야 하는 것이다.

공리주의가 노예제를 배제하는 근거가 부당하다는 롤즈의 비판은 이러한 관점에서 새롭게 이해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고전적인 형태의 노예제에서는 노예주가 얻는 이득이 비참한 생활수준에 처해 있는 노예가 받는 불편을 상쇄시킬 수 없다는 사실이 명백했기 때문에 공리주의적인 논증을 통해 배제시키는 것이 가능했다. 그런데 현대 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더 이상 고전적인 형태의 노예가 아니라 더 나은 생활수준을 획득하기 위해, 혹은 현재의 만족스러운 생활수준을 상실하지 않기 위해 입헌 민주주의의 가치들이 훼손되는 것을 묵인하고 시장의 지배를 수용하는 시민들인 것이다. 시장을 민주화해야 한다는 요구는 생활수준의 하락에 대한 우려에 묻혀서 묵살되지만, 경제적 효율성을 곧 사회 정의로 보는 시장 공리주의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상황은 아무런 문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바람직할 수도 있다. 반면에 공정으로서의 정의에서는 시민들이 생활수준의 향상을 위해 자유를 포기하는 상황은 언제나 정의롭지 못한 것으로 간주된다.²⁵⁾ 왜냐하면 “정의로운 사회에서는 평등한 시민적 자유

25) 롤즈는 이 점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적어도 이론상으로는 사람들은 그들이 가진 약간의 기본적 자유를 포기하는 대신, 그로 인해 생겨나는 사회적·경제적 이득으로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을지도 모

란 이미 보장된 것으로 간주되며, 따라서 정의에 의해 보장된 권리들은 어떠한 거래나 사회적 이득의 계산에도 좌우되지 않는 것”(TJR, 3-4쪽)이기 때문이다.

요약하자면 롤즈는 경제적 효율성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내세워서 입헌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는 시장 중심의 공리주의적 정의관에서 협동체계의 공정성이라는 사회적 가치에 기초하고 있는 입헌 민주주의 중심의 공정으로서의 정의로의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전환은 자본주의적 효율성에 대한 민주주의적 정당성의 우위를 관철하는 것으로서 현대 사회에서 입헌 민주주의를 온전히 실현하기 위한 기초 작업이 된다. 경제적 효율성이 곧 사회 정의라는 시장 공리주의의 논리를 거부하지 않는 한 입헌 민주주의는 시장에 종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IV. 사회의 기본구조의 전환: 복지국가 자본주의에서 재산소유 민주주의로

이 절에서는 정의의 두 원칙을 만족시키는 사회의 기본 구조가 복지국가 자본주의가 아니라 재산소유 민주주의(혹은 민주적 사회주의)

른다.... 돌아오는 경제적 보상이 월등할 때, 사람들이 그들의 정치적 권리를 내버리려고 하는 경우를 상상해보자. 두 원칙이 배제하고자 한 것은 바로 이러한 종류의 거래이다. 그 원칙들은 서열적으로 배열되어 있기 때문에 참작해야 할 여건들 하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기본적 자유와 경제적·사회적 이득과의 교환을 허용하지 않는다.”(TJR, 55쪽) 롤즈는 정의의 두 원칙에 서열적 혹은 축차적 순서(serial or lexical order)를 부여함으로써 평등한 기본적 자유가 사회적·경제적 이득의 계산에 의해 훼손되는 것을 막고자 한다. “[정의의] 이러한 원칙들은 제1원칙이 제2원칙보다 우선하는 서열적 순서로 배열되어야 한다. 이렇게 순위를 매기는 것은 제1원칙이 요구하는 평등한 기본적 자유에 대한 침해가 보다 큰 사회적·경제적 이득에 의해 정당화되거나 보상될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 이 자유들은 다른 기본적 자유들과 상충할 때에만 그 내부에서 제한되며 조정될 수 있는 중심적인 적용 범위를 지니고 있다.”(TJR, 51-52쪽)

라는 롤즈의 주장이 현대 입헌 민주주의의 위기에 대해 갖는 실천적 함의를 드러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공정으로서의 정의의 내용적 핵심인 정의의 두 원칙을 입헌 민주주의와의 연관 하에서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롤즈는 정의의 두 원칙을 다음과 같이 정식화한다(TJR, 53쪽).

제1원칙

각자는 모든 사람의 유사한 자유 체계와 양립할 수 있는 평등한 기본적 자유의 가장 광범위한 전체 체계에 대해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제2원칙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은 다음 두 가지, 즉

- (a)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득이 되고,
- (b) 공정한 기회 균등의 조건 아래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된 직책과 직위가 결부 되게끔 편성되어야 한다.

정의의 제1원칙은 평등한 기본적 자유의 원칙으로서 여기서 기본적인 자유는 정치적 자유(선거권과 피선거권), 언론과 결사의 자유, 양심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 심리적 억압과 신체적 폭행 및 절단을 포함하는 인신의 자유, 사유 재산을 소유할 권리와 법의 지배라는 개념이 규정하는 이유 없는 체포와 구금으로부터의 자유 등등의 목록에 의해 규정된다. 정의의 제2원칙은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a)에 해당하는 차등의 원칙과 (b)에 해당하는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으로 나뉜다. 롤즈에 따르면 이러한 원칙들은 “모든 사회적 가치들—자유, 기획, 소득, 재산 및 자존감의 기반—은 이들 가치의 전부 또는 일부의 불평등한 분배가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한 평등하게 분배되어야 한다.”(TJR, 54쪽)라는 보다 일반적인 정의관의 하나의 특수한 경우이다. 이러한 정의관에 따르면 모든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지 않는 단순한 불평등은 정의롭지 못한 것이 된다.

평등한 기본적 자유의 원칙과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은 현대 사회에 이미 반영되어 있는 입헌 민주주의의 이념들을 정의의 원칙이라는 형식을 통해 정식화한 것으로 생각된다. 예를 들어 입헌 민주주의

를 채택하고 있는 대한민국은 헌법 전문에서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으며,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서는 평등한 기본적인 자유의 원칙 아래 다루어지는 자유들의 목록을 제시하고 있다.²⁶⁾

그렇다면 문제는 입헌 민주주의 사회가 차등의 원칙을 받아들여야 할 근거가 있는가 하는 점이다. 입헌 민주주의의 이념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 평등한 기본적인 자유의 원칙과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 외에 차등의 원칙을 별도로 받아들여야 할 이유가 있는가? 이에 대한 롤즈의 대답은 시민들 사이의 불평등이 차등의 원칙에 의해 합당하게 조정되지 않는 한 평등한 기본적인 자유의 원칙과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 또한 실질적인 효력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다. 시민들 사이의 과도한 불평등은 시민의 평등한 기본적인 자유와 공정한 기회 균등을 형식적인 것으로 전락시키며, 이와 함께 입헌 민주주의 자체를 형식적인 것으로 전락시킨다. 이렇게 볼 때 차등의 원칙은 시민들 사이의 불평등이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들을 훼손하지 않게 조정함으로써 입헌 민주주의를 온전하게 실현하기 위해 도입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평등한 정치적 자유의 보장과 관련된 롤즈의 다음과 같은 언급은 이 점을 잘 보여준다.

평등한 정치적 자유의 공정한 가치가 모든 사람에게 보장되기 위해 어떤 보완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 역사적으로 볼 때 입헌적인 정부가 갖는 주요 결점은 정치적 자유의 공정한 가치를 보장하는 데 실패했다는 점이다. 필요한 보완적인 조치가 취해지지도 않았고 사실상 그러한 것을 심각히 다룬 적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정치적 평등과는 양립할 수 없을 정도로 벌어진 재산과 부의 분배상의 격차가 일반적으로 법적 체제에 의해 허용되어 왔다. [...] 경제적·사회적 체제에 있어서의 불평등은 유리한 역사적 조건 아래 존재해온 어떠한 정치적 평등도 곧 해치게 된다(TJR, 198-199쪽)

롤즈가 여기서 말하는 ‘평등한 정치적 자유’는 입헌 민주주의의 핵

26)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jsp?WORK_TYPE=LAW_BON&LAW_ID=A0001&PROM_NO=000_10&PROM_DT=19871029&HanChk=Y(국회법률정보시스템) 참조.

심인 국민주권주의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국민주권주의는 경제적·사회적 불평등이 입헌 민주주의와 양립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규제될 것을 요구한다. 국민들 사이에 일정 수준 이상의 평등이 확보되지 않으면 주권이 강력한 경제적·사회적 권력을 소유한 일부의 구성원에게 있게 되므로 국민주권은 하나의 허울로 전락하며, 이 경우 ‘입헌 민주주의’라는 이름 하에서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 사회의 기본구조는 금권정, 과두정 혹은 참주정이 되기 때문이다.²⁷⁾ 밀즈(C. Wright Mills)는 이미 1957년에 『파워 엘리트』에서 미국 사회의 권력이 민주적 절차와 상관없이 형성된 정치·경제·군사 엘리트에 의해 독점되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²⁸⁾ 크라우치(C. Crouch)에 의하면 이러한 반민주적인 권력 독점이 21세기 초의 민주주의 위기의 직접적 원인이다. “오늘날 정부가 지식과 전문성을 점점 더 기업 경영진과 지도층에 의존하게 되고, 정당이 그들로부터 자금의 많은 부분을 충당하게 되면서, 새로운 지배 계급, 정치와 경제 모두 장악한 계급이 구축된 사회로 우리는 꾸준히 나아가고 있다. 새 지배 계급은 사회가 점점 더 불평등해짐에 따라 사회경제적 권력과 부를 더 많이 가지게 됐을 뿐만 아니라 특권적인 정치적 역할마저 획득했다. 이것이 21세기 초 민주주의 위기의 핵심이다.”²⁹⁾

그렇다면 입헌 민주주의 사회 내에서 경제적·사회적 불평등은 어떤 방식으로 조정되어야 하는가? 롤즈의 차등의 원칙은 이에 대한 하

27) 이는 정원섭의 다음과 같은 우려와 맥을 같이 한다. “시민들의 정치 참여가 현재와 같은 수준 이하로 떨어질 경우 민의를 대변하고자 하는 대의민주주의 체제는 허울만 남은 채 일부 과잉 정치화된 집단들과 돈의 마력이 결합해 새로운 유형의 금권정치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는 비판적인 전망 역시 없지 아니하다. 더욱이 효율성을 강조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경제의 규모가 성장할수록 빈부의 양극화 현상은 심화되면서 대의적 정치 과정에서 부자의 이해관심은 과잉 반영되는 반면 빈자의 그것은 과소 반영되고 말 것이라는 우려는 언제든 현실이 될 수 있다.”(정원섭, 『롤즈의 공적 이성과 입헌민주주의』, 철학과 현실사, 2008, 9쪽)

28) C. Wright Mills, *The Power Elit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57, 361쪽 참조.

29) C. Crouch, *Post-Democracy*, Cambridge: Polity Press, 2004, 51-52쪽.

나의 유력한 대답으로서 차등의 원칙의 핵심인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불평등은 부정의’는 사회 정의에 대한 우리의 직감에 잘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우리가 기업, 군대, 학교 등 다양한 사회 협동체 내에서 일부의 구성원들에게 보다 유리한 지위를 허락하는 이유는 그러한 불평등이 모두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 있다는 암묵적인 합의가 있기 때문이다. 만약 사회 협동체 내의 불평등이 그러한 암묵적인 합의가 이루어질 수 없는 방식으로 특정 구성원들에게만 이익이 된다면 정의롭지 못한 것이 된다. 롤즈의 차등의 원칙은 정의에 대한 이러한 직감적 신념을 보다 구체화한 것으로서 ‘최소 수혜자의 최대 이익’을 기준으로 내세운다. 경제적·사회적 불평등을 합당하게 조정함으로써 평등한 기본적 자유의 원칙과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 차등의 원칙의 핵심적인 목표라는 점을 고려하면 최소 수혜자의 이익이 불평등 조정의 기준점이 되어야 한다는 롤즈의 주장은 충분히 정당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소 수혜자의 이익의 극대화는 사회 협동체 내에서 가장 불리한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들에게 평등한 기본적 자유와 공정한 기회 균등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상황에 최대한 근접해 가는 것이며, 만약 차등의 원칙을 통해 최소 수혜자에게 위의 두 가지가 실질적인 의미를 갖게 된다면 이들보다 더 나은 위치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평등한 기본적 자유와 공정한 기회 균등이 보장될 것임이 명백하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 사회 협동체 내의 경제적·사회적 불평등은 차등의 원칙에 따라 최소 수혜자를 포함하여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된다는 조건 하에 정당성을 확보하게 된다.

차등의 원칙이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 경제적·사회적 불평등인 만큼 사회의 기본 구조, 즉 사회의 주요 정치·경제·사회 제도가 차등의 원칙을 만족시키는 방식으로 편성되어야 차등의 원칙이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공정으로서의 정의에서는 정의의 두 원칙에 대한 논의는 이 원칙들을 만족시키는 사회의 기본 구조에 대한 논의로 이행하게 된다. 공정으로서의 정의의 핵심

목표가 입헌 민주주의를 실질적으로 실현시키는 것인 만큼, 정의의 두 원칙을 만족시키는 기본 구조는 곧 입헌 민주주의에 적합한 기본 구조이기도 하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롤즈가 복지국가 자본주의를 분명히 거부하고 재산소유 민주주의 혹은 자유주의적 사회주의를 기본 구조로서 채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³⁰⁾ “재산소유 민주주의는 정의의 두 원칙에 의해 표현되는 모든 주요한 정치적 가치들을 실현시키는 반면, 자본주의 복지국가는 그렇지 못하다. 나는 그러한 민주주의[재산소유 민주주의]를 자본주의에 대한 대안으로 생각한다.”³¹⁾

30) 에스핑-안데르센(G. Esping-Andersen)은 복지국가를 ‘탈상품화’-사회 복지가 개인을 시장 의존적 소비에서 자유롭게 하는 정도-에 따라 다음의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한다(G. Esping-Andersen, *The Three Worlds of Welfare Capitalism*,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0 참조). 첫째 유형은 자유주의적 복지 국가로서 탈상품화 정도가 가장 낮고, 소득 조사의 의한 공공 부조 프로그램을 상대적으로 중시함으로써 복지 급여 대상을 빈곤층과 저소득층에 맞추는 경향이 있다. 자유주의적 복지국가에서 복지 급여는 노동 의욕을 떨어뜨리지 않는 수준에서 제공되어야 하므로 대상자의 자격 기준을 엄격하게 하여 수급자가 복지 급여를 받는 과정에서 치욕을 느끼게 한다. 영미권의 국가들이 이러한 복지 국가 유형으로 분류된다. 둘째 유형은 조합주의적 복지 국가로서 탈상품화 정도가 중간 수준이며 사회 보험 중심의 복지 체계이다. 탈상품화의 정도가 자유주의 모형에 비해 높지만 시장 경제에서의 성과와 지위를 그대로 반영하기 때문에 재분배 효과가 떨어진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 대륙 국가들이 여기에 속한다. 마지막 유형은 사회 민주적 복지 국가 유형으로서 탈상품화 정도가 가장 높고 사회 보장 제도에 대한 계층간 분화 현상이 낮은 계층 통합적 복지 체제를 구축한 것으로 평가된다. 여기서는 국가와 시장, 노동 계급과 중간 계급 사이에 존재하는 대립과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최소한의 생활수준의 보장을 넘어 가능한 한 최대 수준에서 불평등을 완화하고자 한다. 스칸디나비아 지역의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등이 사회 민주적 복지 국가로 분류된다. 복지국가의 이러한 세 가지 유형들 중에 롤즈의 직접적인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영미권의 자유주의적 복지국가 모델이라 할 수 있다. 반면에 사회 민주적 복지국가 모델은 롤즈가 말하는 ‘재산소유 민주주의’와 대체로 유사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으며, 따라서 복지국가가 이러한 모델로 이해되는 경우에 한해서 롤즈의 정의론은 복지국가의 옹호론으로 간주될 수 있다.

31) J. Rawls, *Justice as Fairness: A Restatement*, Erin Kelly(ed.), Cambridge/London: Th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2001, 135-136쪽. 롤즈가 민주주의를 자본주의의 대안으로 제시하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입헌 민주주의의 위기의 직접적인 원인인 자립적인 시장 권력을 민주주의에 맞게 변혁하는 문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다.

지금까지 Wolff를 비롯한 많은 학자들은 롤즈의 정의론을 “평등주의라는 상표를 단 복지국가 자본주의에 대한 철학적 옹호론”³²⁾으로 이해했다. 이러한 해석에 따르면 차등의 원칙의 목표는 민주주의 사회 내에서 일정한 생활수준 이하에 처해 있는 구성원들을 구제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정의의 두 원칙을 만족시키는 사회의 기본 구조는 복지국가 자본주의가 된다. 그러나 이는 롤즈의 차등의 원칙의 취지를 잘못 이해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입헌 민주주의 사회 내에서 평등한 기본적 자유와 공정한 기회 균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차등의 원칙의 목표가 있으므로 단순히 최소 수혜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생활수준을 보장하는 데서 그치는 복지국가 자본주의는 이를 구현하는 사회의 기본구조가 될 수 없다.

롤즈는 복지국가 자본주의가 크게 다음의 두 가지 점에서 정의의 두 원칙을 만족시키지 못한다고 지적한다.³³⁾ 첫째, 자유방임 자본주의와 마찬가지로 복지국가 자본주의는 재산 소유의 광범위한 불평등을 허용함으로써 경제적 통제력 그리고 그와 함께 정치권력이 소수에게 집중되는 것을 막지 못한다. 따라서 복지국가 자본주의는 평등한 정치적 자유들의 공정한 가치를 실현하지 못하며, 공정한 기회 균등 또한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못한다. 둘째, 복지국가 자본주의는 비록 기본적 필요들을 충족시키는 사회적 최소치를 매우 관대하게 책정하고 보장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차등의 원칙의 핵심인 최소 수혜자의 최대이익을 경제적·사회적 불평등을 규제하기 위한 원리로 인식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일찍이 헤겔이 지적한 바 있듯이³⁴⁾ 사회 협

32) R. P. Wolff, *Understanding Rawls: A Reconstruction and Critique of "A Theory of Justice"*, Princeton, N. 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7, 195쪽 참조.

33) J. Rawls, 앞의 책, 137-138쪽.

34) G. W. F. Hegel, "Grundlinien der Philosophie des Rechts", *G. W. F. Hegel Werke in Zwanzig Banden. Band 7*, Frankfurt am Main: Suhrkamp, 1986, 389-391쪽 참조.

동체 내에서 일부의 구성원들이 자립하지 못하고 다른 구성원들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한다는 상황은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들 사이의 공정한 협력 체계로서의 사회라는 관념과 양립할 수 없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복지국가 자본주의 하에서 최소 수혜자 계층은 평등한 정치적 지위를 확보하지 못하여 공적인 정치 문화로부터 소외당하게 된다.

결국 복지국가 자본주의의 핵심적인 문제점은 그것이 분배를 일차적으로 시장에 온전히 맡겨둔다는 데 있다. 롤즈가 보기에 시장의 분배는 일반적으로 불공정한 것이다. “자발적인 시장 거래로부터 귀결되는 분배는 (비록 경쟁적 효율성의 모든 이상적 조건이 구비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시장 체제의 구조뿐만 아니라 수입과 부의 선행된 분배가 공정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불공정하다.”³⁵⁾ 입헌 민주주의와 관련하여 볼 때 시장의 분배는 시민의 평등한 정치적 자유와 양립할 수 없는 재산 소유의 불평등을 거의 필연적으로 야기하게 된다.³⁶⁾ 그러나 복지국가 자본주의는 시장 분배의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전혀 건드리지 않는다. 복지국가 자본주의 하에서 국가는 시장 분배가 낳는 부작용들을 최소한의 수준에서 교정하는 보완적인 역할을 하게 될 뿐이며, 그러한 한에서 시장의 지배를 보완하고 강화한다.³⁷⁾ 말하

35) J. Rawls, “The Basic Structure as Subject”, in: Alvin I. Goldman and Jaegwon Kim (eds.), *Values and Morals*, Dordrecht/Boston: D. Reidel, 1978, 60쪽.

36) 웨보르스키(A. Przeworski)는 시민으로서 선호하는 자원배분과 시장을 통해 도달하는 자원배분 사이의 불일치를 지적한다. “자본주의가 비합리적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개인들이 시장적 행위자이면서 동시에 시민이라는 사실에서 연유한다. 시민으로서 선호하는 자원배분은 시장을 통해 도달하는 배분과 일반적으로 일치하지 않는다. [...] 실제로 민주주의는 부존자원에 대한 최초의 분배의 결과로 인해 가난해지고 억압받으며, 또는 비참해진 사람들에게 국가를 통해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때문에 시장에 의해 유인되는 소비의 분배와 시민들이 집단적으로 선호하는 분배는 다르다는 것이 틀림없다.”(A. Przeworski, *Democracy and the Marke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1, 111-112쪽)

37) 이를 하버마스는 ‘보상계획주의’라고 부른다. Jürgen Habermas, “Technik und Wissenschaft als >Ideologie<”, *Technik und Wissenschaft als >Ideologie<*, Frankfurt am Main: Suhrkamp, 1974, 76-78쪽 참조.

자면 복지국가 자본주의는 분배를 시장에 맡겨둠으로써 불공정한 분배가 일어나는 것을 용인하고 차후에 국가를 통해 분배의 불공정함을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에서 재조정하는 것인데, 이러한 식의 기본구조는 정의롭지도 않고 효율적이지도 않다.³⁸⁾

롤즈가 대안으로 제시하는 재산소유 민주주의는 차등의 원칙에 기초하여 시장의 분배를 직접적으로 조정한다는 점에서 복지국가 자본주의와 본질적으로 구분된다. 롤즈는 재산소유 민주주의의 특징을 크게 다음의 두 가지로 요약하고 있다(TJR, xiv-xvi쪽).

첫째, 재산소유 민주주의는 효율적인 경쟁 시장 체계를 갖추고 있으면서 부 및 자본 소유의 지속적인 분산을 시도함으로써 사회의 소수가 경제 및 정치적 삶 그 자체를 통제하는 것을 방지한다. 복지국가 자본주의가 각 기간의 마지막 순간에 적게 가진 사람들에게 소득을 재분배하는 반면, 재산 소유 민주주의는 각 기간이 시작하는 순간 생산적 자산과 인간 자본(교육된 능력과 훈련된 기술)의 광범위한 소유를 보장함으로써 부의 집중을 피하며, 상속 및 증여에 관한 법률을 통해 자본과 자원의 소유를 상당 기간 지속적으로 분산시킨다. 이를 위해 롤즈는 상속 및 증여에 정의의 원칙을 적용시키는 누진세제(progressive tax system)를 도입한다.³⁹⁾ 복지국가 자본주의에서는 각자의 총소득(블로소득과 근로소득)을 산정하고 이 소득에 대한 누진과세를 통해 복지기금을 마련하는 반면, 재산소유 민주주의에서 누진세는 협동의 공정한 조건을 위협할 수 있는 블로소득(상속, 증여 등)으로 엄격히 한정되어서 평등한 자유의 가치가 유지될 수 있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 생각되는 재산의 광범위한 분산을 유도한다. 이러한 누진세제에서는 상속과 증여에 정의의 두 원칙이 적용된다. “상속은 결

38) 밀(J. S. Mill)은 이와 같은 사후적인 방식의 소득재분배는 부정의 그 자체를 치유하기보다는 부당한 권력의 결과에 약간 손대는 정도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J. S. Mill, “Principles of Political Economy”, *The Collected Works of John Stuart Mill*, vol. 3, Indianapolis: Liberty Fund, 2006, 953쪽.

39) 재산소유 민주주의에서의 누진세제에 대해서는 정원섭, 『롤즈의 공적 이성과 입헌민주주의』, 철학과 현실사, 2008, 42-44쪽 참조.

과적으로 생겨나는 불평등이 가장 불운한 사람에게 이득이 되고 자유 및 기회 균등과 양립할 수 있는 경우에 허용될 수 있다.”(TJR, 245쪽) 이를 통해 롤즈는 누진세제가 노동유인(incentive)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함으로써 시장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한편, 재산소유 민주주의를 “토지와 자본이 평등하지 않을 수 있더라도 널리 소유되는 민주 체제”(TJR, 247쪽)로 구성함으로써 자본주의적 효율성과 민주주의적 정당성을 조화시키고자 한다.

둘째, 재산소유 민주주의의 목적은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 간의 장기간에 걸친 공정한 협동 체계로서의 사회라는 관념을 실현시키는 데 있다. 따라서 생산수단의 소유와 부의 분배를 시장에 맡겨두고 그러한 분배의 결과 일정한 생활수준 이하에 처하게 되는 구성원들을 구제하는 것에 그치는 복지국가 자본주의와는 달리, 재산 소유 민주주의는 모든 시민들이 자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하고 평등한 조건 하에서 상호 존중에 기초하여 사회적 협동에 참여하도록 유도한다. 이는 시민의 평등한 기본적 자유와 공정한 기회 균등을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필수조건으로서 앞서 언급한 바 있는 부 및 자본 소유의 지속적인 분산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재산소유 민주주의의 핵심은 결국 시장의 분배를 ‘민주화’함으로써, 즉 입헌 민주주의의 제반 가치들을 훼손하는 과도한 불평등을 입헌 민주주의의 원리에 따라 지속적으로 재조정함으로써 현대 사회에서 입헌 민주주의를 실질적으로 실현하는 데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렇게 볼 때 롤즈의 공정으로서의 정의는 정치적 민주주의의 실질적인 보장을 위해서 시장이 민주화하려는 ‘경제적 민주주의’의 일종으로 분류될 수 있다.⁴⁰⁾ 대표적인 경제적 민주주의자라 할 수 있는 보울스와 진티스는 “우리를 현재의 우리가 되게 하는 과정, 그리고 우리의

40) 경제적 민주주의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의 책들을 참조. S. Bowles & H. Gintis, *Democracy and Capitalism*, New York: Basic Books, Inc., 1987; R. A. Dahl, *A Preface to Economic Democracy*, Berkeley/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5; R. M. Christenson et al., *Ideologies and Modern Politics*, Cambridge: Harper & Row, 1981.

삶을 규제하는 규칙이 지속적으로 갱신되고 변형되도록 하는 과정을 결정하는 근본 원리는 재산권의 상호작용에 의해서가 아니라 민주주의에 의해서 제공되어야 한다.”⁴¹⁾고 천명하고, 이를 위해서는 자본주의경제의 중심적 제도들을 민주적 사회질서에 맞게 변환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입헌 민주주의를 사회 구성의 최종적인 준거점으로 놓고 시장을 포함한 사회 제도 전반을 입헌 민주주의를 실질적으로 실현시키는 방식으로 재구성하려는 공정으로서의 정의와 같은 맥락에 있다.

요약하면 롤즈의 공정으로서의 정의는 분배를 원칙적으로 시장에 맡겨둠으로써 민주주의적 기본권과 양립할 수 없는 경제적·사회적 불평등을 허용하는 복지국가 자본주의를 입헌 민주주의의 원칙에 따라 시장의 분배에 강력한 규제를 가하는 재산소유 민주주의로 대체함으로써 입헌 민주주의를 실질적으로 실현시키고자 한다. 롤즈는 점점 더 시장 중심으로 되어가고 있는 현대 사회에 일종의 입헌 민주주의적인 구조 전환이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는 것이다.

V. 결론

지금까지 롤즈의 공정으로서의 정의가 현대 입헌 민주주의의 위기에 대해 갖는 실천적 함의를 살펴보았다. 현대 사회에서 입헌 민주주의는 점차 시장의 권력에 종속됨으로써 형식적인 것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으며, 롤즈의 공정으로서의 정의는 입헌 민주주의를 사회 구성의 최종적인 준거점으로 놓고 시장을 포함한 사회 제도 전반을 입헌 민주주의를 실질적으로 실현시키는 방식으로 재구성함으로써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자 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롤즈는 크게 사회 정의관과 이를 만족시키는 사회의 기본 구조의 두 가지 측면에서 입헌 민주주의적인 전환을 요구한다.

41) S. Bowles & H. Gintis, *Democracy and Capitalism*, New York: Basic Books, Inc., 1987, 3-4쪽.

먼저 롤즈는 현대 사회에서 시장의 논리를 관철시키는 이데올로기의 역할을 하고 있는 공리주의를 입헌 민주주의에 적합한 정의관인 공정으로서의 정의로 대체함으로써 자본주의적 효율성에 대한 민주주의적 정당성의 우위를 관철하고자 한다. 우리는 공리주의가 현대 사회에서 주로 ‘경제적 효율성=사회 정의’라는 원칙을 내세우는 시장 공리주의로 현현함을 살펴보았다. 시장 공리주의는 경제적 효율성을 정당성의 최종적인 준거점으로 놓음으로써 사회 구성의 근본 원리로서 그 자체로 정당성의 최종적인 준거점으로 기능하려는 입헌 민주주의와 직접적으로 충돌하며, 결국 평등한 기본적 자유, 공정한 기회 균등 등 입헌 민주주의의 제반 가치들은 시장 공리주의에 의해 정언적인 성격을 잃고 가언적인 것으로 전락하기에 이른다. 롤즈는 이에 맞서서 사회 정의를 공정한 협동체계로서의 사회라는 개념에 의해 설명하는 공정으로서의 정의를 내세운다. 시장 공리주의가 ‘경제적 효율성=사회 정의’라는 원칙을 내세우는데 비해 공정으로서의 정의에서는 ‘협동체계의 공정성=사회 정의’가 원칙이 되며, 이에 따라 효율성은 공정성에 종속된다. 사회 정의관에서의 이러한 전환은 자본주의적 효율성에 대한 민주주의적 정당성의 우위를 관철하는 것으로서 현대 사회에서 입헌 민주주의를 온전히 실현하기 위한 기초 작업이 된다.

계속해서 롤즈는 사회의 기본구조를 복지국가 자본주의에서 재산소유 민주주의로 변혁함으로써 민주주의와 시장 사이의 권력관계를 역전시키고 입헌 민주주의를 실질적으로 실현시키고자 한다. 이는 정의의 두 원칙의 논리적 귀결로서 평등한 기본적 자유와 공정한 기회 균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경제적·사회적 불평등을 합당하게 조정하려는 차등의 원칙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다. 롤즈는 분배를 원칙적으로 시장에 맡겨둠으로써 입헌 민주주의와 양립할 수 없는 경제적·사회적 불평등을 방조하는 복지국가 자본주의를 정의의 두 원칙을 실현할 수 없는 사회의 기본구조로 보아 거부한다. 롤즈가 대안으로 제시하는 재산소유 민주주의는 입헌 민주주의의 원칙에 따라 시

장의 분배에 강력한 규제를 가하는 체제로서 누진세제 등을 포함한 상속 및 증여에 관한 법률을 통해 자본과 자원의 소유를 상당 기간 지속적으로 분산시킨다. 사회의 기본구조에서의 이러한 전환은 시장을 민주주의에 맞게 재구성함으로써 현대 사회에서 입헌 민주주의를 온전히 실현하기 위한 시도라 할 수 있다.

위의 분석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롤즈의 공정으로서의 정의는 현대 입헌 민주주의의 위기를 원칙적인 대응을 통해 돌파해나가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즉 입헌 민주주의의 온전한 실현이 곧 사회 정의의 실현이라는 데 동의할 수 있다면 입헌 민주주의의 제반 가치들이 실질적인 의미를 갖는 사회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이 현재 하나의 실천적 당위로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 김명식, 『롤즈의 공적 이성과 심의민주주의』, 『철학연구』, 제65집, 2004.
- 김비환, 『자유지상주의자들, 자유주의자들, 그리고 민주주의자들: 기본권을 통해본 시장과 민주주의』,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05.
- 정원섭, 『공적 이성과 민주적 의지 형성-존 롤즈의 정치적 자유주의』,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4.
- _____, 『롤즈의 공적 이성과 입헌민주주의』, 철학과 현실사, 2008.
- 황경식, 『社會正義의 철학적 기초』, 문학과 지성사, 1985.
- Agamben, G., *Démocratie, dans quel état?*, Paris: La fabrique, 2009.
- Baker, R. W., *Capitalism's Achilles Hill*, Hoboken: John Wiley & Sons, Inc., 2005.
- Barber, B., *Strong democrac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3.
- Bowles, S. & H. Gintis, *Democracy and Capitalism*, New York: Basic Books, Inc., 1987.
- Christenson, R. M. et al., *Ideologies and Modern Politics*, Cambridge: Harper & Row, 1981.
- Crouch, C., *Post-Democracy*, Cambridge: Polity Press, 2004.
- Dahl, R. A., *A Preface to Economic Democracy*, Berkeley/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5.
- Esping-Andersen, G., *The Three Worlds of Welfare Capitalism*,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0.
- Habermas, J., *Theorie des kommunikativen Handelns. Band II: Zur Kritik der funktionalistischen Vernunft*, Frankfurt am Main: Suhrkamp, 1995.
- _____, "Technik und Wissenschaft als >Ideologie<", *Technik und Wissenschaft als >Ideologie<*, Frankfurt am Main: Suhrkamp, 1974.

- Hegel, G. W. F., “Grundlinien der Philosophie des Rechts”, *G. W. F. Hegel Werke in Zwanzig Banden*. Band 7, Frankfurt am Main: Suhrkamp, 1986.
- Kymlicka, W., *Contemporary Political Philosoph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2.
- Marcuse, H., *One-Dimensional Man*, Boston: Beacon Press, 1964.
- Marx, K., “Ökonomisch-philosophische Manuskripte aus dem Jahre 1844”, *Marx Engels Werke*. Ergänzungsband I: Schriften, Manuskripte, Briefe bis 1844, Berlin: Dietz Verlag, 1981.
- Marx, K., & Engels, F., “Manifest der Kommunistischen Partei”, *Marx Engels Werke*. Band 4, Berlin: Dietz Verlag, 1990.
- Mill, J. S., “Principles of Political Economy”, *The Collected Works of John Stuart Mill*, vol. 3, Indianapolis: Liberty Fund, 2006.
- Mills, C. W., *The Power Elit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57.
- Przeworski, A., *Democracy and the Marke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1.
- Rawls, J., *A Theory of Justice*. Revised Edition, Cambridge/London: Harvard University Press, 2003.
- _____, “Distributive Justice”, reprinted in: Samuel Freeman(ed.), *John Rawls. Collected Papers*, Cambridge/London: Harvard University Press, 1999.
- _____, *Justice as Fairness: A Restatement*, Erin Kelly(ed.), Cambridge/London: Th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2001.
- _____, “Justice as Fairness: Political not Metaphysical”, reprinted in: Samuel Freeman(ed.), *John Rawls Collected Papers*, Cambridge/London: Harvard University Press, 1999.
- _____, “Justice as Reciprocity”, reprinted in: Samuel Freeman(ed.), *John Rawls. Collected Papers*, Cambridge/London: Harvard

- University Press, 1999.
- _____, *Political Liberalism*,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3.
- _____, “The Basic Structure as Subject”, in: Alvin I. Goldman and Jaegwon Kim (eds.), *Values and Morals*, Dordrecht/Boston: D. Reidel, 1978.
- Skocpol, T., *Diminished democracy*, Norman: University of Oklahoma Press, 2003
- Tilly, C., *Democracy*, Cambridge/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7.
- Wolff, R., *Understanding Rawls: A Reconstruction and Critique of “A Theory of Justice”*, Princeton, N. 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7.
- Wood, N., *Tyranny in America: Capitalism and National Decay*, London/New York: Verso, 2004.

웹자료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jsp?WORK_TYPE=LAW_BON
&LAW_ID=A0001&PROM_NO=00010&PROM_DT=19871029
&HanChk=Y](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jsp?WORK_TYPE=LAW_BON&LAW_ID=A0001&PROM_NO=00010&PROM_DT=19871029&HanChk=Y) (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

ABSTRACT

Rawls's Justice as Fairness as a Solution to the Crisis of Modern Constitutional Democracy

Jung, Tae-Chang

In modern industrial society, constitutional democracy is in crisis and subjugated by market power that is gradually turning it into a bare formality. Rawls's justice as fairness aims to overcome the crisis and restore constitutional democracy. It suggests reformations in the two aspects of a contemporary conception of justice and social institutions. Concerning the former, Rawls strives to assure the priority of democratic legitimacy over capitalistic efficiency by replacing the utilitarian conception of justice (that plays the role of capitalistic ideology in modern industrial society) with justice as a fairness that is more apt for a constitutional democracy. Concerning the latter, he struggles to reverse the dominance of the market over democracy and substantially restore constitutional democracy by replacing the capitalist welfare state that allows: distributions to be appropriated by market forces, passes over economic and social inequalities incompatible with democratic basic rights, and with a property-owning democracy that regulates the distributions of the market under the authority of democratic principles. Rawls's justice as fairness can be assessed as an attempt to restore constitutional democracy in a modern industrial society by assuring the priority of democracy over a market economy.

Keywords: Constitutional Democracy, Economic Democracy,
Theory of Justice, Utilitarianism, Basic Rights, Inequalities